

● 제30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1. 4. 26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채유미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2288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채유미 의원 발의(찬성 24명)
- 나. 제안일 : 2021. 4. 2.
- 다. 회부일 : 2021. 4. 6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, 나아가 아동의 생존권 확보 및 안전한 삶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들의 올바른 급식 지원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있어 시장의 급식단가 예산 확보

사항을 반영(안 제12조의2제1항)

-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청, 자치구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의2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, 나아가 아동의 생존권 확보 및 안전한 삶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여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올바른 급식지원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개정안은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생존권 확보 및 안전한 삶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교육청, 자치구, 법인·단체 등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는 안 제12조의2(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) 을 신설하고, 그 밖에 현행 조례상 조문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음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13조(아동 사회안전망 구축) 시장은 아동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</p> <p>4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</p> <p>5. (생 략)</p> | <p>제12조의2(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) ① 시장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하여 아동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, 자치구,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아동 사회안전망 구축) 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</p> <p>4.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|

□ 아동 급식지원 예산 확보 (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)

- 안 제12조의2제1항은 “시장은 아동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하여 아동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”고 신설하는 내용임.
-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2항제3호, 제35조제4항¹⁾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, 제36조제5항²⁾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1)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3.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(급식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또한, 동법 제68조제1항³⁾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6항⁴⁾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18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, 그 밖의 자치구는 상위법령 및 보건복지부 ‘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’을 토대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.

- 서울시는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,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지도 역할을 하고 있고 자치구는 집행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| 구분 | 주요 업무 |
|-----------------|---|
| 보건복지부 | • 아동급식 관련 법·제도 총괄(표준매뉴얼 등) |
| 시·도 | • 관할 시·군·구 아동급식 재정 지원, 분담 및 통계 총괄 • 아동급식 전반(예산 등)에 대한 점검, 지도 • 관할 시·군·구 아동급식 신청 안내 및 홍보 |
| 시·군·구 및 아동급식위원회 | • 아동급식 운영 및 관리, 예산확보, 홍보 및 안내 • 아동급식 지원체계 구성·운영 |
| 교육청 | • 각 학교에 급식신청 안내서 및 급식신청서 배포 • 학기 중 중식 지원 • 학기 중 토·공휴일 중식 예산(시·도교육비특별회계) 지원 |
| 읍·면·동 | •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• 아동급식 신청 접수 및 조사(재판정 포함) •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에 아동급식 지원기준 적합 아동의 정보 입력 |

출처 : 2021년도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(보건복지부)

3) 「아동복지법」 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, 시·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6조, 제29조의4, 제29조의5,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소방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교육감·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4)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56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⑥ 시·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- 서울시는 아동급식에 대한 재원 지원·분담 등 자치구의 정책 추진 전반을 지원·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급식단가 상승과 대상자 변동에 의한 예산 증가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수급가정 및 한부모가정 아동, 보호자 부재 등 급식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가정 환경 상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선정해 1식당 6,000원을 지원하고 있음.

<서울시 아동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현황>

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998.1월 | 2004.8월 | 2005.3월 | 2009.1월 | 2011.5월 | 2016.7월 | 2020.2월 |
| 2,000원 | 2,500원 | 3,000원 | 3,500원 | 4,000원 | 5,000원 | 6,000원 |

출처 : 2020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계획(서울시)

2021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계획

-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- 지원단가 : 1식당 6,000원
- 선정기준
 - 국민기초수급가정 및 한부모가정 아동, 보호자 부재 등 급식지원대상(7개 항목)에 해당하면서 가정 환경상 가정내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
①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 ②한부모가정 ③긴급복지지원대상가정 ④보호자부재
⑤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 ⑥중위소득 52%이하 가정 ⑦담임교사, 통·반장 등 추천

-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-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- 추진실적 : 20년 지원대상 아동현황(하반기 방학 중 31,587명, 학기 중 28,652명)
- 소요예산 : 22,465,350천원(시비50%) 학기 중 조·석식 및 방학 중 조·중·석식

출처 : 2021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계획(서울시)

- 사업수행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하반기 기준 방학 중 31,587명, 학기 중 28,652명의 아동이 지원받았으며, 대상자 조사·선정·수요 파악 후 급식비 신청을 통해 서울시는 자치구에 시비를 교부하고 구비 매칭 후 대상 아동을 지원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재 아동급식 지원 식비는 1식당 6,000원으로 서울시 주요 7개 품목 외식비와 비교해 볼 때 현실 물가 수준보다 낮으며 원가 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단가 현실화 및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.

<서울시 주요 7개 품목의 외식비 현황>

| 지역 | 냉면 | 비빔밥 | 김치찌개 백반 | 자장면 | 삼계탕 | 칼국수 | 김밥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서울 | 9,077 | 8,769 | 6,769 | 5,346 | 14,462 | 7,462 | 2,692 |

출처 :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서비스(2021. 3. 기준)

□ 아동 급식지원 협력 강화 (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)

- 안 제12조의2제2항은 “시장은 아동급식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, 자치구,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”고 신설하는 내용임.
- 아동급식 지원은 보건복지부, 시·도, 시·군·구 및 아동급식위원회, 교육청, 읍·면·동이 주요 주체로 구성되어 대상아동 발견·관리·운영·급식전달 체계로 지원되고 있음.

| 구분 | 주요 업무 |
|-----------------|---|
| 보건복지부 | • 아동급식 관련 법·제도 총괄(표준매뉴얼 등) |
| 시·도 | • 관할 시·군·구 아동급식 재정 지원, 분담 및 통계 총괄 • 아동급식 전반(예산 등)에 대한 점검, 지도 • 관할 시·군·구 아동급식 신청 안내 및 홍보 |
| 시·군·구 및 아동급식위원회 | • 아동급식 운영 및 관리, 예산확보, 홍보 및 안내 • 아동급식 지원체계 구성·운영 |
| 교육청 | • 각 학교에 급식신청 안내서 및 급식신청서 배포 • 학기 중 중식 지원 • 학기 중 토·공휴일 중식 예산(시·도교육비특별회계) 지원 |
| 읍·면·동 | •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• 아동급식 신청 접수 및 조사(재판정 포함) •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에 아동급식 지원기준 적합 아동의 정보 입력 |

출처 : 2021년도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(보건복지부)

- 현재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취약아동의 경우 방학 중에는 지자체가 조·중·석식을 지원하며, 학기 중에는 조·석식은 지자체, 중식은 교육청이 지원하고 비율에 따라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.

| 지원시기 | | 유형별 소관부서 | | 비 고(재원부담 등) |
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| | 조·석식 | 중식 | |
| 학기 중 | 평일 | 지자체 | 교육청 ¹⁾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자체 : 시비 50%, 구비 50% • 교육청¹⁾ : 학교급식(초·중·고 무상) • 교육청²⁾ :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100% 교육청→자치구로 교부 |
| | 토·공휴일 | 지자체 | 교육청 ²⁾ | |
| 방학 중 | | 지자체 | | |

출처 : 2021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계획(서울시)

- 아동급식 지원체계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운영 및 관리, 예산 확보, 지원 등 교육청과 자치구 등의 역할도 중요하며, 특히 단가 인상 및 예산 확보 요청 시 서울시와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필요함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결식우려아동의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문 의 처

장일진 입법조사관 (02-2180-8148)